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21. . .<br>(제 회) |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제출자    | 국무위원 안경덕<br>(고용노동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21.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대학생의 신속한 취업지원을 위하여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대상을 대학의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과 더불어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 이내로 남은 사람 등을 포함하도록 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전환 및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훈련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요건 중 최소 훈련기간 및 시간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의 확대(안 제6조제2항제13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으로 제한하던 것을,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으로 하고 방송대학·사이버대학 등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은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요건 완화(안 제22조제1항제1

호)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직업  
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훈련과정의 인정요건을 충족  
해야 하는데, 그 요건 중 훈련과정의 훈련기간은 2일 이상, 훈련시간은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은 훈련기간 1일 이상, 훈련시간 8시간  
이상)으로서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던 것을 훈련기간은 폐지하고  
최소 훈련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은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은 훈련기간 1일 이상, 훈련시간 8시간 이상)”을 “훈련시간이 4시간 이상”으로 한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6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br>개발훈련의 대상) ① (생 략)                                                                                      | 제6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br>개발훈련의 대상) ① (현행과<br>같음)                                                                                                        |
| ②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br>“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br>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br>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훈련의<br>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br>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br>한다. | ② -----<br>-----<br>-----<br>-----<br>-----<br>-----<br>---                                                                                         |
| 1. ~ 12. (생 략)                                                                                                              | 1. ~ 12. (현행과 같음)                                                                                                                                   |
| 1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br>른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졸업<br>이 예정된 사람                                                                           | 1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br>른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사<br>람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br>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다<br>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5<br>호에 따른 학교에 재적하고<br>있는 사람은 수업연한의 제한<br>을 받지 아니한다. |
| 14. (생 략)                                                                                                                   | 14. (현행과 같음)                                                                                                                                        |
|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br>인정) ① 법 제24조에 따라 고<br>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br>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br>인정) ① -----<br>-----<br>-----                                                                                                   |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과정은 훈련기간 1일 이상, 훈련시간 8시간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훈련과정의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가. ~ 다. (생략)

2. (생략)

② ~ ④ (생략)

-----.

1. 훈련시간이 4시간 이상-----

-----

-----

-----

-----

-----

-----

-----.

-----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
| 연 락 처         | (044) 202 - 7270 |